

「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0. 31(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11. 9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11. 9(수)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)

-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, 가족교육·상담, 정보제공,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·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함.
- 평창군의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, 위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
(안 제8~16조)
-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·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17~23조)
-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4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반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·훈련, 의료서비스, 양육 등 각종 지원 사업의 범위와
 -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, 자문위원회 설치·구성 및 표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
 -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후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부